

No. 29

행정 명령

특정 법 조항 정지 유지

2011년 8월 25일에 발급한 행정 명령 No. 17에서 뉴욕주 Bronx, Kings, New York, Queens, Richmond, Nassau, Suffolk 카운티 및 인접지역에 대한 재해 긴급사태 선포를 했으므로; 그리고

2011년 9월 15일에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하여 행정 명령 No. 17을 개정한 행정 명령 No. 22를 발행하였고, 이는 다음의 추가의 카운티 영토 경계 내에서 2011년 9월 12일부터 유효합니다: Albany, Broome, Chenango, Chemung, Clinton, Columbia, Delaware, Dutchess, Essex, Greene, Herkimer, Montgomery, Oneida, Orange, Otsego, Putnam, Rensselaer, Rockland, Saratoga, Schenectady, Schoharie, Sullivan, Tioga, Ulster, Warren, Washington 및 Westchester; 그리고

행정법 2-B조항 섹션 29-a에 의해,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, 방해하거나, 지연시킨다면, 해당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이나 규정, 또는 그것의 일부를 정지, 변경 및 수정할 권한을 주므로; 그리고

2011년 9월 15일에 행정 명령 No. 21을 발행하여 주 재해 비상사태로 인해 분실된 주 발행 문서 재발급에 요구되는 비용 지불에 대한 특정 조항의 정지를 명령했으므로; 그리고

2011년 9월 15일에 법 조항의 정지를 명령하는 행정 명령 No. 22를 발행하여 농업 및 천연자원 시설 복구를 가능하게 하고, 주 재해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지역 농장들을 위한 시급한 자금의 필요에 대한 언급을 했으므로; 그리고

행정법 섹션 29-a에 따르면 법 조항 정지는 30일 이상 될 수 없으나,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, 정지기간이 30일 추가로 연장될 것이므로;

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는, 행정법 2-B조 섹션 29-a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, 그리고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한 후, 이로써 행정 명령 No. 21 과 No. 22에 의해 명령된 법 조항들의 정지를 2011년 11월 13일까지 유지할 것을 명령합니다.

이천 십일년 시월 십삼일 Albany시에서 내게
주어진 권한 및 주 인증의 권한에
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